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8
----------	-------

발의연월일 : 2018. 3. 6.

발의자 : 민병두 · 강병원 · 이 훈
송옥주 · 김성수 · 윤후덕
조승래 · 서형수 · 권미혁
소병훈 · 제윤경 · 이재정
진선미 · 김종민 · 박홍근
김태년 · 유승희 · 안규백
신경민 · 권칠승 · 임종성
김현권 · 안호영 · 유은혜
고용진 · 기동민 · 원혜영
이원욱 · 홍익표 · 김경협
유동수 · 김경수 · 전재수
오영훈 · 위성곤 · 변재일
박용진 · 한정애 · 김진표
민홍철 · 김해영 · 박광온
김정우 · 강훈식 · 추미애
의원(45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Fin-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돋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

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음.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펀 테크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영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이용자수, 이용기간 제한 등)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안 제2조제4호).
-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임(안 제4조제1항).
- 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마.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평가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규제특례)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7조).
- 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안 제10조).
- 아.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등록·신고, 영업행위 및 감독·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규제특례를 인

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규제특례를 인정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규정은 특례를 인정할 수 없음(안 제11조).

자.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보고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예상 위험 등 고지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수령 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함. 특히,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혁신금융사업자는 이러한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5조).

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인)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

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위원회 등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안 제18조).

파.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19조).

하.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함.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안 제21조).

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

너.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 최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짐(안 제23조).

더.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을 받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24조).

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존의 지정 결정

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28조).

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0조).

버.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중앙회
- 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

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4조(신청) ①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심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16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하

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혁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혁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심사기간) ① 금융위원회(혁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사의 공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

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심사위원회는 해당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혁신심사위원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혁신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혁신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혁신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혁신심사위원회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6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6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심사위원회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정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규제의 특례

제10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

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련법령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관련법령상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제11조(규제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의결하여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다고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은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및 감독 등

제12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 등 신청서에 기재된 주요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2. 중간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최종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수 및 특징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계획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21조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 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5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험 고지)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손해를 입은 이용자의 수 및 손해의 규모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혁신금융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행위에 따른 벌금
 5. 혁신금융사업자의 재산상태
 6.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 ④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의 수령 시에 거래 위험의 감수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방법, 배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등은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2.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4.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지 여부

⑤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내용,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지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28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규제 신속 확인) 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 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3항에 따라 타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신에 소요되는 총기간은 제2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3항에 따라 타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및 지정취소 등

제20조(지정기간의 만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유지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혁신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심사한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실태

3. 지정기간 연장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4. 그 밖에 혁신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제22조(금융업 인허가등의 특례 및 법령의 개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혁신심사위원회가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1. 혁신심사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예상하였던 결과가 성취되었다고 판단할 것

2.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④ 혁신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완료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등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대상인 규정 이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5조(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자진철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에 금융위원회에

스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의 경우 제20조를 준용

한다.

제28조(중지 및 변경)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

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
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로 인해 금융소비
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그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협용
이 있는 경우 제8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7조에 따른 지정 결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29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등
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
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장 별칙 등

제30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6.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
8.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면책) 혁신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권한 등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업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융관련법령

금융관련법령
(제2조제1호 관련)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사채 등록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 「농업협동조합법」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험업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산림조합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선팩투자회사법」
18.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외국환거래법」
23. 「은행법」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6. 「전자금융거래법」
27.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9. 「전자서명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2. 「중소기업은행법」
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4. 「한국산업은행법」
35. 「한국수출입은행법」